

서울중앙지방법원 2018. 5. 29 선고 2018가단11112 판결 [구상금 청구의 소]

전 문

원고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

피고1. 주식회사 A

2. B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18. 5. 29.

주 문

1.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. 2. 1.부터 2018. 4. 8.까지는 연 6%의, 2018. 4. 9.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무변론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)

판사이우철

별지